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A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System of Unpaid Household Labor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강사 윤소영

박사과정 김은희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Moon, Sook Jae

Lecturer : Yoon, So Young

Doctoral Course : Kim, Eun Hee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연구의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the estimation of the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within the national economy system to be reflected in the related policy-making. By measuring economic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and estimating the ration to GDP,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productivity of the unpaid household labor and thu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ocio-economic status of women. Especially, i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of estimating unpaid household labor as a method applicable to the present economic and legal system.

To organize the method of economic valuation of unpaid household labor and calculate the ration to GDP, this study used three approaches: replacement cost method 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and opportunity cost method. Although the estimated result reveal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showed a great extent of deviation according to the estimating methods and the wage rate, total value of household labor ranged from one hundred and thirty eight to two hundred and thirty trillion wons, about 28-48% of GDP in Korea.

주제어(Key Words): 무보수 가사노동(unpaid household labor), 국민경제체계(the national economy system), 전문가대체법(replacement cost method individual function), 종합적 대체법(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

I. 문제제기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주부 13,760천명 가운데 전업주부는 약 62%에 해당하는 8,594천명으로 추정되며(통계청, 2000), 이들은 국민계정체계의 노동력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6,460천명으로, 이 중 67% 이상이 '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통계청, 2001).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수행하는 가정내의 활동, 즉 무보수 가사노동을 생산범주에서 벗어난 비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무보수라는 이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마저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을 하는 인간주체의 경제적 기여도와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가사노동 담당자는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을 위한 '사랑, 봉사, 헌신'의 차원에서 언급된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통계와 국민소득통계에서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는 1970년대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마침내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5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제안하게 되었다. 199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도 무보수 가사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문숙재, 윤소영, 2001).

우리 나라는 1997년 수립한 1998-2002년까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화하여 조사표를 보완하며",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을 위해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활용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며",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를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정무장관 제2실, 1997)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인 경제체계와 법체계에 적용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생활시간조사(통계청조사, 전국 만 10세 이상 46,109명 대상)가 1999년 9월 실시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과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들(김준영, 2001; 김태홍, 2001; 문숙재, 윤소영, 2001; 여성부, 2001)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 이전에,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론을 개발, 이를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거나 국민계정체계에 근거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를 통해 그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이혼,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김선희, 1991; 김정희, 1993, 1994, 1999; 문숙재, 정영금, 1991, 1993; 정영금, 1989).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성들 특히, 무보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혼 및 상해시 전업주부의 노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여 왔다.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노력과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국내외 연구들(김준영, 2001; 김태홍, 2001; 문숙재, 윤소영, 2001; 여성부, 2001; OECD National Accounts, 2000; UNDP, 1995)의 제안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은 선행연구들이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보다는 주 담당자로서 주부들의 노동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 및 그 생산성이 합리적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수행하는 수행자(대부분 전업주부)들의 노동가치는 동시에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취업주부, 미혼여성 그리고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결국,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이를 그늘경제(shadow economy)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지 지표체계에 포함시키게 하는 것이며, 가사노동 담당자(주로 주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 GDP에 대한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체계와 법체계에 적용 가능한 무보수 가사노동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가정은 필수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가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시장재화 및 용역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가족

〈표 1〉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과 적용 임금자료

평가방법 연구자	조사 시기, 지역 및 대상	적용 임금을	전문가 대체비용법	총 합 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김애실 (1985)	1985년 서울 전업주부 66명	83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 대(對)전년 임금상승율 21.8%이용 85년 가치환산	- 방법 (1) - 여성 임금을	- 방법 (2)/(3) - 여성 임금을	- 방법 (4) - 여성임금평균값
정영금 (1989)	1989년 서울 전업주부 477명	1987년 평균임금에 대(對)전년 임금상승율 9.8% 가산하여 이용	- 방법 (1) - 전체 임금을	- 방법 (2-1) - 실제 지불 비용	- 방법 (5) - 여성 임금을
김선희 (1991)	1988년 부산 전업주부 572명	1988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	- 방법 (1) - 여성 임금을	- 방법 (2-1) - 기관협정임금 - 방법 (3-1) - 여성 임금을	- 방법 (5) - 여성 임금을
문숙재 정영금 (1991)	1990년 서울/부산 전업주부 508명	1988년 평균임금에 대(對)전년임금상승율고려 90년 임금을로 환산	- 방법 (1) - 전체 임금을	- 방법 (2-1) - 기관 협의임금	- 방법 (5) - 여성 임금을
김정희* (1994)	1992년 대구/경북 전업주부 397명 취업주부 418명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방법 (1-1) - 여성 임금을	- 방법 (2-2) - 기관 협정임금 - 방법 (3-2) - 여성 임금을	- 방법 (5-1) - 여성 임금을
김태홍** (2001)	1999년 생활시간조사 전업주부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방법 (1-1) - 여성 임금을	- 방법 (2-2) - 여성 임금을	- 방법 (5-1) - 여성 임금을

* 김정희(1994), 김태홍(2001)의 경우, 대 GNP비율추정시는 한달을 30.4일 산정함

- ◆ 방법(1) : 가사노동 영역별 노동시간 * 30 * 대체직업 임금을
- 방법(1-1) : 가사노동 영역별 노동시간 * 30.4 * 대체직업 임금을
- 방법(2) : 총가사노동시간 * 26 * 파출부 임금을
- 방법(2-1) : 총가사노동시간 * 30 * 파출부 임금을
- 방법(2-2) : 총가사노동시간 * 30.4 * 파출부 임금을(사회기관협정임금)
- 방법(3) : (단순노동시간 * 26 * 가정부임금) + (가정경영시간 * 26 * 개인서비스업관리자 임금을)
- 방법(3-1) : (단순노동시간 * 30 * 가정부임금) + (가정경영시간 * 30 * 개인서비스업관리자 임금을)
- 방법(3-2) : (단순노동시간 * 30.4 * 가정부임금) + (가정경영시간 * 30.4 * 개인서비스업관리자 임금을)
- 방법(4) : 취업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최소한 얼마의 월급이면 일하시겠습니까?
- 방법(5) : 총 가사노동시간 * 30 * 동일한 연령 · 학력 근로자의 임금을
- 방법(5-1) : 총 가사노동시간 * 30.4 * 동일한 연령 · 학력 근로자의 임금을

〈표 2〉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월 평균/단위: 원)

평가방법 연구자	전문가 대체비용	총합적 대체비용		기회비용
		1인대체	2인대체	
김애실(1985)	271,933	170,669	393,222	371,094
정영금(1989)	538,438	420,469		529,941
김선희(1991)	346,105	파출부 238,331 가정부 399,250 관리자 735,277	469,232	417,499
문숙재·정영금(1991)	676,847	497,996		616,683
김정희(1994)	640,800	파출부 422,400 가정부 616,700 관리자 1,218,600	762,900	638,100
김태홍(2001)	968,555	856,689		1,026,169
				학력별 고졸 908,306 대졸 1,979,835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소득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미시적으로 가정소득에의 기여, 거시적으로는 국민총생산에의 기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식적인 경제부문에서 노동가치를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작업은 순가치평가법, 투입측정법, 산출측정법의 3가지 경로를 통해 수행되어왔다. 순가치와 투입측정법은 두 가지 모두 시간사용자료에 근거한 화폐적 용어로 가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가치 접근법이 노동시간과 그 가치만을 고려하는 반면, 투입측정법은 소비, 자본재의 비용, 임금 등 가사노동에 포함된 다른 투입물도 고려한다. 즉, 노동을 가치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노동투입물의 가치추정을 위해서 노동시간사용에 통계자료를 통해 그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게 되며,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이 가장 일반적인 기법이다(정무장관 제 2실, 1997).

한편, 가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를 유사한 시장재화 및 서비스와 비교하여 가정에서 수행된 노동을 화폐로 추정하는 산출에 의한 측정법은 적절한 자료수집, 질적 차이를 가진 가정생산물 가격 추정, 동일한 시장재 및 서비스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시되어 왔다. 비록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

비용법처럼 사용된 시간만으로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결국 투입된 시간과 산출된 양 및 질의 가치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방법이 국가계정의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객관적인 시간사용자료뿐 아니라 임금조사자료를 필요로 하며, 이 때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자료와 대응되는 임금자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추정된다.

따라서 시간사용조사를 통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온 연구들을 가치평가 방법별로 살펴보면, 〈표 1〉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GNP

노동력이라고 불리는 “경제적”활동과 “비경제적”활동간의 구분은 모호하지만 연구자들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자료는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윤소영, 1998). 첫째, 경제활동에 대한 협의의 개념으로 유급노동력, 즉 유급의 봉급이나 임금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용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이 받는 임금이나 봉급의 가치는 국

민계정에 포함된다. 둘째, 시장지향적 노동력의 개념으로 유급의 노동력뿐 아니라 자영업자,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장 및 사업체에서 일하는 무보수 가족종사자, 협동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 등을 내포하며, 이러한 모든 경제적 교환은 국민경제 통계에 포함된다. 셋째,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적용된 개념으로 시장생산 종사자뿐 아니라 가정에서 생산된 1차 생산물의 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ILO와 UN 등 국제적인 표준은 이 개념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개념에서는 생명을 위한 생산 혹은 생존을 위한 생산인 가사노동과 관련된 활동은 경시하고 있다(Waring, 1988; 윤소영, 1998에서 재인용). 넷째, 총 노동력의 개념으로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정내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가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정 내 가사노동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 개념에 포함되는 가사노동 활동의 구분은 “제 3차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유급의 노동자에게 위임 가능하다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Reid, 1934)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모든 공식적인 통계는 ILO와 UN이 채택한 3번째 기준을 따르므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 등의 국민계정체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노동력 재생

산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되고 있다(윤소영, 1998).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복지척도로서 GNP 및 GDP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즉,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액인 GNP 경우, 주부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가사노동은 GNP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노동이 사회화되면 GNP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생산의 증가 없이 GNP는 증가하며, 이 경우 GNP가 증가해도 경제적인 복지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정무장관(제2)실, 1997).

이러한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와 이를 GNP에 포함시키는 문제들은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근거한 GDP와 비교, 그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3 참조).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국민계정체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제도적 반영을 위한 기초작업을 통해 기존의 경제 및

〈표 3〉 각국 무보수 가사노동의 대 GDP 비율

국 가	구 분	조사시기	조사대상	평가방법에 따른 GDP 대비 비율		
				전문가 대체비용법	총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핀란드		1987-1988	10세 이상	-	45 %	59 %
노르웨이		1990	16 - 79세	37 %	38 %	-
뉴질랜드		1991	12세 이상	51 %	42 %	66 %
일본		1991	15세 이상	18.3 %	14.6 %	21.6 %
캐나다		1992	15세 이상	43 %	34 %	54.2 %
호주		1992	15세 이상	58 %	54 %	69 %
독일		1992	12세 이상	46 %	44 %	63 %
한국	김정희	1992	20-59세 주부	42 %	51.9 %	35.7 %
	김태홍	1999	20세이상 전업주부	13.4 %	11.9 %	14.7 %
			10세 이상 남녀	31.8 %	29.9 %	36.7 %

자료: UNDP(1995), 김정희(1994), 김태홍(2001)

법체계에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무보수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성별, 결혼상태 및 취업상태별 가사노동 시간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평가방법에 따른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대(對) GDP 비율은 어떠한가?
 - ① 평가방법별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의 합리적인 산출방식은 무엇인가?
 - ②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③ 평가방법별 대(對) GDP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2. 조사도구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9년 9월에 조사된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와 1999년 7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의 1999년 「경제활동인구연구」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국민들의 생활 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국민계정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은 850개의 표본조사구를 통해 각 가구 내에서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하여

최종 응답한 개인은 42,973명이며, 이들의 2일간 시간을 기록한 시간사용일지(85,906일)가 코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활시간조사」원자료 중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경제활동인구¹⁾로 간주되는 만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78,576개의 시간일지기록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생활시간조사」에 제시된 행동분류체계(대분류 9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25개)를 근거로 전체 가사노동 및 개별 가사노동 시간을 <표 4>와 같이 구분하였다.

한편, 가사노동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문유경, 2001; 조희금, 1998; 이기영 외, 1997; 김정희, 1994)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김태홍, 2001; 김정희, 1994; 김선희, 1991; 정영금, 1989)에서 성별, 연령,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등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 1) 1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됨. 이때 경제활동인구라 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포함하며, 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자를 말함(노동부, 2000)

<표 4> 가사노동시간 정의

가사노동	정 의
식 생활	식사준비+설거지, 식후정리+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의 생활	세탁, 세탁물 널기+옷 정리+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의류수선+세탁서비스받기+재봉, 뜨개질
주 생활	방 물품정리+집안청소+그외 청소 및 정리+가재도구 집손질 및 관련서비스받기+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그 외 집 관리
가족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신체적 돌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기타 보살피기)+초·중·고생 보살피기(씻기기, 등 하교 도와주기, 숙제 공부 봐주기, 선생님과 상담 학교방문, 기타 보살피기)+배우자 보살피기+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그외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시장보기+쇼핑+내구재구매 관련행동+가계부정리+가정계획+은행 관공서 일보기
기 타	기타 가사일+가정관리 관련 이동+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자료 :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조사대상자들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한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은 혼인상태 및 배우자유무,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5개의 집단(미혼여성, 기혼 유배우자 취업여성, 기혼 유배우자 미취업여성, 기혼 무배우자 취업여성, 기혼 무배우자 미취업여성)으로, 남성은 혼인상태와 배우자유무를 기준으로 3개 집단(미혼남성, 기혼 유배우자 남성, 기혼 무배우자 남성)으로 분류하였다.²⁾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 <표 6>과 같다.

여성표본의 경우, 미혼집단(여성 I집단: 9,566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취업집단(여성 II집단: 13,821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미취업집단(여성 III집단: 11,967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취업집단(여성 IV집단: 2,982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미취업집단(여성 V집단: 3,717표본)의 5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집단(남성 I집단: 10,749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남성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별, 혼인상태 및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2) 남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배우자유무가 그들의 가사노동시간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집단만 구분하였다.

<표 5> 여성집단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집단 범주	미혼여성 (I)		기혼유배우 취업 (II)		기혼유배우 미취업 (III)		기혼무배우 취업 (IV)		기혼무배우 미취업 (V)		계 N (%)
		N	%	N	%	N	%	N	%	N	%	
교육수준	무학	40	0.42	1526	11.04	863	7.21	1422	47.69	2468	66.40	6319(15.03)
	초등졸	466	4.87	3313	23.97	1721	14.38	788	26.43	797	21.44	7085(16.85)
	중졸	2784	29.10	2878	20.82	1950	16.29	312	10.46	194	5.22	8118(19.30)
	고졸	3026	31.63	4611	33.36	5653	47.24	380	12.74	226	6.08	13896(33.04)
	초대졸	2307	24.12	636	4.60	772	6.45	32	1.07	20	0.54	3767(8.96)
	대졸이상	943	9.86	857	6.20	1008	8.42	48	1.61	12	0.32	2868(6.82)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연령	10대	4315	45.11	12	0.09	32	0.27	0	0.00	0	0.00	4359(10.37)
	20대	4701	49.14	1136	8.22	2134	17.83	30	0.01	18	0.48	8019(19.07)
	30대	426	4.45	4319	31.25	3966	33.14	218	7.31	60	1.61	8989(21.38)
	40대	88	0.92	4185	30.28	2502	20.91	534	17.91	158	4.25	7467(17.76)
	50대	20	0.21	2463	17.82	1788	14.94	658	22.07	400	10.76	5329(12.67)
	60대 이상	16	0.17	1706	12.34	1555	12.91	1542	51.71	3081	82.89	7890(18.76)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경제활동여부	유	4095	42.81	13821	100.0	0	0.00	2982	100.0	0	0.00	20898(49.69)
	무	5471	57.19	0	0.00	11967	100.0	0	0.0	3717	100.0	21155(50.31)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미취업자녀유무	유	-	-	2985	21.60	4575	38.23	332	11.13	470	12.64	8362(25.74)
	무	-	-	10836	78.40	7392	61.77	2650	88.87	3247	87.36	24125(74.26)
	계	-	-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32487(100)

* 무응답으로 인해 총계는 동일하지 않음

〈표 6〉 남성집단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미혼남성 (I)		기혼유배우 남성 (II)		기혼무배우 남성 (III)		계
		N	%	N	%	N	%	N (%)
교육수준	무학	56	0.52	1354	5.50	266	23.01	1676 (4.59)
	초등졸	620	5.77	3703	15.04	306	26.47	4629 (12.67)
	중졸	3258	30.31	3811	15.48	204	17.65	7273 (19.91)
	고졸	3517	32.72	9717	39.47	274	23.70	13508 (36.98)
	초대졸	2265	21.07	1909	7.75	38	3.29	4212 (11.53)
	대졸이상	1033	9.61	4124	16.75	68	5.88	5225 (14.31)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연령	10대	4160	38.70	8	0.03	0	0.00	4168 (11.41)
	20대	5051	46.99	1342	5.45	14	1.21	6407 (17.54)
	30대	1306	12.15	7083	28.77	160	13.84	8549 (23.41)
	40대	184	1.71	6676	27.12	294	25.43	7154 (19.59)
	50대	42	0.39	4699	19.09	184	15.92	4925 (13.48)
	60대이상	6	0.06	4810	19.54	504	43.60	5320 (14.57)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경제활동여부	유	4714	43.86	20837	84.64	670	57.96	26221 (71.79)
	무	6035	56.14	3781	15.36	486	42.04	10302 (28.21)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미취학 자녀 유무	유	-	-	7098	28.83	150	12.98	7248 (28.12)
	무	-	-	17520	71.17	1006	87.02	18526 (71.88)
	계	-	-	24618	100.00	1156	100.00	25774 (100)

* 무응답으로 인해 총계는 동일하지 않음

Ⅱ집단: 24,618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집단 (남성 Ⅲ집단: 1,156표본)의 3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 가사노동시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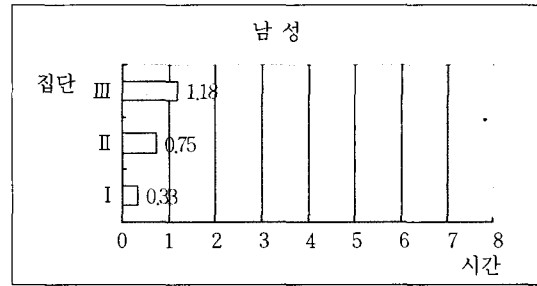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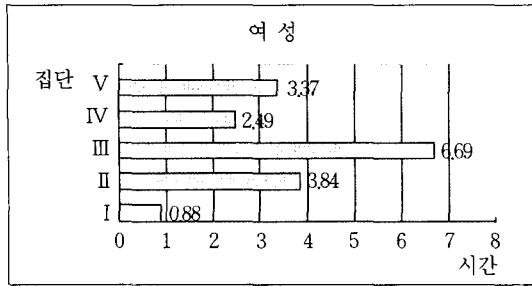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의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 실태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1일 평균 총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 Ⅰ집단이 가장 짧은 0.88시간으로 나타났고, 여성 Ⅲ집단이 6.69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Ⅱ집단(3.84시간)과 여성 Ⅴ집단(3.37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남성 Ⅲ집단이 1.18시간으로 남성 Ⅰ집단(0.33시간)이나 남성 Ⅱ집단(0.75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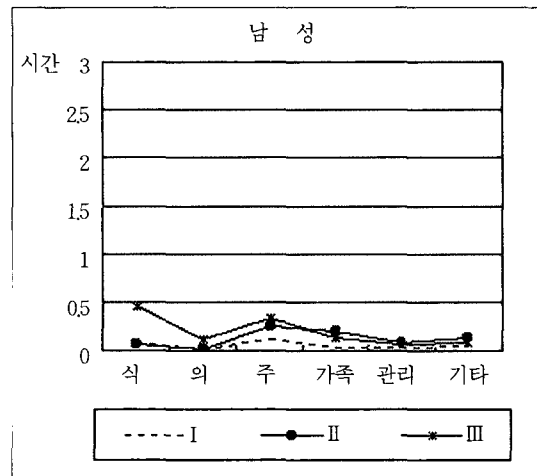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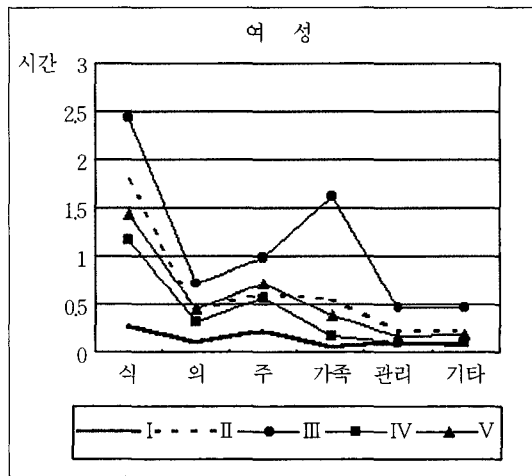
사노동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 실태는 여성의 경우, 다섯 집단 모두 식생활 영역에서의 시간 소비량이 가장 많으며, 기혼이면서 유배우자인 Ⅱ와 Ⅲ집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생활, 의생활, 가족 보살피기의 순으로 시간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Ⅲ집단의 경우는 식생활(2.43시간), 가족보살피기(1.62시간), 주생활(0.98시간), 의생활(0.72시간), 가정관리 및 기타의 순으로, 여성 Ⅱ집단의 경우는 식생활(1.78시간), 주생활(0.62시간), 가족보살피기(0.57시간), 의생활, 가정관리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혼 무배우자인 Ⅲ집단이 식생활(0.45시간), 의생활(0.12시간), 주생활(0.33시간)에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림 1〉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그림 2〉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보살피기와 기타영역에서는 II집단이 타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미취업 여성은 모든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 취업여성도 다른 집단보다는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경우 취업여부보다는 배우자유무에 의해서 가사노동 시간 사용량이 차이가 나며, 기혼여성의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무가 가사노동의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배우자가 없는 기혼남성의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였다.

3. 국민경제체계 내 가사노동 가치평가

본 연구는 통계청의 시간사용자료와 임금조사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전문가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기회비용법을 통해 GDP 대 가사노동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하였다.

1)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별 산출방식

(1) 전문가 대체법에 의한 추정

가사노동을 각 작업 영역으로 분류, 각 영역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해당 대체 직종의 시장임금

율을 적용시켜 가사노동의 전체 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인구수를 적용하여 총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 경우, 단순노동의 강조에 의한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의 문제점이 있으나 다른 방법에 비해 가사노동의 내용이 다양하며,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사용조사」에서 제시된 행동분류체계 중 가사노동 영역을 기준으로 1992년 통계청이 고시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유사한 대체직종을 선정하였다. 대체 직종의 선정기준은 분류된 가사노동 행동이 대체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가 가능한지(제3자 기준: the 3rd principle) 여부에 근거하였는데, 이에 대해 Kulshreshtha & Gulab Singh(1999)는 비시장 가사노동활동을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형(I)과 주로 시장에서 대체하는 유형(II)으로 구분해서 대체직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도 유형 I에 속하는 일반적으로 사회화가 가능하지 않은 활동들은 단순작업으로, 유형 II에 속하는 사회화가 가능한 활동은 유사한 해당직종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설거지 및 식후정리의 경우 활동유형 I로 분류, 가사근로자(직종분류코드 51211)로, 식사준비의 경우 활동유형 II에 속하므로 조리사(직종분류코드 51221)로 대체하였다. 월평균 근로일수는 GDP와의 비교를 위해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눈 30.4일로 계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임금구조조사는 직종 중(소)분류까지만 임금통계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사용조사의 가사노동 행동분류 중 대체직종이 세세분류에 속하는 경우, 해당직종의 중(소)분류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을 적용하였다.

임금을 적용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김태홍, 2001; 김정희, 1994; 김선희, 1991; 김애실, 1985)은 미취업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일부 연구(문숙재·정영금, 1991; 정영금, 1989)에서는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여성 및 남성의 임금을 중 하나를 양성(兩性)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여성에게 여성 임금을,

남성에게 남성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과대,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를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OECD National Accounts, 2000).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산출방식을 제안하고자,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여성근로자 임금을 적용한 방법(A)과 여성에게 여성임금률과 남성에게 남성임금율을 적용한 방법(B),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임금을 합한 후 2로 나누고 이 평균임금률³⁾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방법(C)을 모두 제시하였다.

■ 전문가 대체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 산정
 • 소분류별 가사노동(시간)×대체직종 시간당 임금률(원)×30.4(일)×인구수(명)

(2) 총합적 대체법에 의한 추정

총합적 대체법에 의한 가치평가방법은 대체직의 선정과 적용 임금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들(김선희, 1990; 김애실, 1985; 김정희, 1994)은 파출부, 가정부, 관리자, 가정부와 관리자의 1인 및 2인 대체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파출부를 통한 평가는 조사시점의 실제 지불임금과 각 사회기관의 협정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방법들의 평가액에 비해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한편, 관리자 1인 대체는 가사노동의 단순노동영역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정부 1인 대체는 관리영역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김선

3) 각 직종의 여성 근로자 임금률
 = 월 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2) / 평균 근로시간 수
 각 직종 남성 근로자 임금률
 = 월 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2) / 평균 근로시간 수
 * 대체직종 임금률
 = (여성근로자의 임금률 + 남성 근로자의 임금률) / 2

회(1991)와 김정희(1994)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단순노동과 관리영역으로 양분, 각각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가정부와 관리자를 대체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2인 대체법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이에 상응하는 1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보수를 측정하는 종합적 대체비용법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1인 대체법과 2인 대체법을 모두 적용하였는데, 1인 대체법의 경우, 공식 임금체계에서 제시되는 임금을 사용한 김태홍(2001)의 연구를 참고로 가사근로자(51211)를 대체근로자로 선정하였고, 2인 대체법은 가사노동의 영역이 단순노동과 관리영역으로 양분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각각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913)과 종합관리자(13)로 선정하였다.

■ 종합적 대체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 산정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율
 - 1인 대체 : 가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율(원)
 - 2인 대체 : [(가사및 관련 조력원의 임금율 + 종합관리자의 임금율)/2](원)
- 1일평균 가사노동(시간) × 해당 임금율(원) × 30.4(일) × 인구수(천명)

(3) 기회비용법에 의한 추정

주부가 취업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기회비용법의 경우, 직접 설문을 통해 잠재소득을 371,094원으로 산출한 김애실(1985)의 연구는 비슷한 시기에 실제 임금을 적용시킨 최명숙(1986)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주부와 동일한 연령과 학력의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정영금(1989)의 경우 529,941원으로 그 가치가 다른 연구결과보다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고학력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태홍(2001)은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및 연령과 학력을 고려해서 각각 산출한 결과, 연령과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대졸여성집단의 기회비용이 약 19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령집단별 임금율과 여성근로자 임금율을 적용한 경우 높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가사노동 숙련도나 가치가 학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령과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임금률의 적용은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상태와 연령 구분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였다. 노동부의 [1999년 임금구조 기본조사](2000)를 사용하여 각 방법별로 전 직종 여성근로자 임금률(방법 A), 여성에게는 전 직종 여성근로자 임금률과 남성에게는 전직종 남성근로자 임금률(방법 B), 그리고 전 직종에서의 여성과 남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이용한 평균 임금률(방법 C)을 도출하였다.

연령별 가치산정에서는 방법(A, B, C)에 따라 연령집단별 전 직종의 임금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령집단은 [1999년 임금구조기본조사]자료가 5세 간격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산정

- 혼인상태별 : 각 집단 1일평균 가사노동(시간) × 전 직종 전체임금률(원) × 30.4(일) × 인구수(명)
- 연령집단별 : 연령별 1일평균 가사노동(시간) × 각 연령별 전체임금률(원) × 30.4(일) × 인구수(명)

2) 평가방법별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

혼인상태 및 배우자유무와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5개의 여성집단과 3개의 남성집단에 대해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별로 산정한 월평균 경제적 가치평가는 <표 7>과 같다. 집단별로 여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미취업 집단(Ⅲ집단)의 월평균 가사노동의 평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Ⅲ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 가치평가

<표 7> 평가방법별 월 가사노동 가치

(단위 : 원)

방 법		집 단	여 성					남 성		
			I	II	III	IV	V	I	II	III
전문가 대 체 비용법		A	112,906	669,043	842,293	332,880	465,120	98,830	119,533	174,070
		B	112,906	669,043	842,293	332,880	465,120	136,253	168,811	245,450
		C	155,283	818,520	1,198,520	409,184	564,893	117,557	144,187	213,621
종합적 대 체 비용법	2 인 대 체	A	180,576	787,968	1,372,788	510,948	691,524	67,716	153,900	242,136
		B	180,579	787,968	1,372,788	510,948	691,524	83,246	189,194	297,666
		C	201,309	878,438	1,530,404	569,612	770,921	75,491	171,570	269,937
	1 인 대 체	A	118,886	518,775	903,803	336,393	455,279	44,582	101,323	159,415
		B	118,886	518,775	903,803	336,393	455,279	63,161	143,549	225,850
		C	143,658	626,872	1,092,129	406,488	550,146	53,872	122,436	192,633
기 회 비용법		A	137,666	600,723	1,046,573	389,532	527,197	51,625	117,329	184,597
		B	137,666	600,723	1,046,573	389,532	527,197	78,962	179,459	282,349
		C	174,129	759,835	1,323,774	492,705	666,834	65,298	148,405	233,491

* A : 여성임금을 적용

B : 여성은 여성임금을, 남성은 남성 임금을 적용

C : 평균 임금을 [(여성임금+남성임금)/2] 적용

방법별로 적용한 임금률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경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문가 대체법의 가치가 높게 산정된 것(표 2 참조)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경우, 모든 집단별로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방식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2인 대체법을 적용할 때 단순노동시간과 관리적 노동시간을 각각 측정, 이에 상응하는 대체직업 임금률을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역별 시간은 구분하지 않고 대체직업을 단순노동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 선택하고 이 두 대체직의 임금률을 합해서 나누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볼 때, 가사노동 가치평가는 임금률 적용상의 문제와 대체직 선정으로 인한 과소, 과대평가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어떠한 대체직이 선정되어야 하며,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와 2인 대체방식 중 더 적절한 방식은 무엇인가의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법과 다른 산정방식 모두 적합한 임금률 선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표 7>에서 남성의 경우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어떤 임금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회비용법과 같이 취업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기회비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

이렇게 적용 임금률 선택의 문제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온 문제이다. 이는 대부분 전업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그 제도적 반영을 모색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므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4)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시장의 성에 의한 임금률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시장 잠재소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취업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회비용법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시장노동의 기회비용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에 의해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별 대(對) GDP 비율

가사노동의 연평균 가치평가액은 평가방법과 평가시 적용된 임금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률(방법 A)이 적용된 경우, 약 134조에서 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가액은 1999년 우리나라 GDP(약 476,597십억원)의 대략 28%-43% 수준이었다. 여성과 남성 임금률이 각각 적용된 경우(방법 B)에는 그 평가액이 약 142조에서 약 210조원에 이르며, 대 GDP 비율은 30%-44%정도였고, 평균 임금률을 적용(방법 C)한 평가에서는 약 162조-약 228조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낮은 평가액은 약 134조(28.2%)로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법(방법 A)이었고, 종합적 대체법 중 2인 대체법(방법 C)은 약 228조(47.8%)로 다른 방법에 비해 그 가치가 가장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액의 대 GDP 비율이 최저 31%에서 최고 69%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 각국의 여러 연구(표 3 참고)와 비교할 때, 다른 나라들의 경우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김태홍(200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취업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 길다는 점과 기혼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집단의 무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36%-52%로 산정된 김정희(1994)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와 평균 임금률을 사용한 방법 C를 제외하고는 30%-37%로 산정된 김태홍(2001)의 연구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된다.

결국 대 GDP 비율로 살펴볼 때, 우리 나라의 무보수 가사노동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보수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 및 법체계에 적용가능한 복지 지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과 평가방법, 적용된 임금률 및 가사노동 활동의 범주 등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경제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

<표 8> 가사노동의 총 평가액과 대(對) GDP 비율

(단위 : 원)

평가	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종합적 대체비용법		기획비용법	
			2인 대체	1인 대체	혼인상태별	연령집단별
방법 A	연평균 평가액	약 146 조	약 204 조	약 134 조	약 156 조	약 157 조
	대 GDP 비율*	30.62 %	42.88 %	28.23 %	32.69 %	33.06 %
방법 B	연평균 평가액	약 155 조	약 210 조	약 142 조	약 167 조	약 167 조
	대 GDP 비율*	32.64 %	44.18 %	29.79 %	34.99 %	35.02 %
방법 C	연평균 평가액	약 190 조	약 228 조	약 162 조	약 197 조	약 193 조
	대 GDP 비율*	39.99 %	47.80 %	34.11 %	41.34 %	40.53 %

* 가사노동 연간 평가액 ÷ 1999년도 경상 GDP × 100

◆ 방법 A : 여성임금률 적용

방법 B : 여성은 여성임금률, 남성은 남성임금률 적용,

방법 C : 평균 임금률((여성임금률+남성임금률) / 2) 적용

평가와 제도적 반영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 대 GDP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히, 연구결과를 기초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가사노동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및 법체계에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여성 특히, 가정생산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며 그들의 노동권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여성근로자 임금률을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가 결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동일하게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방법 A)하거나, 여성은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남성은 남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방법 B)하였고, 또한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누고 이 평균 임금율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방법 C)시키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특히 기회비용법의 경우, 학력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차이는 배제하고, 연령을 고려한 임금율을 적용하였다. 모든 임금률은 소득세 공제전 실제 노동시간량에 근거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 집단에 따른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는 여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미취업 집단(여성 Ⅲ집단)의 가치액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남성 Ⅲ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별로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방식이 가장 높게, 그리고 1인 대체법이 가장 낮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평가방법 적용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임금률 적용상의 문제와 대체직 선정으

로 인해 과소,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어떠한 대체직이 선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종합적 대체법의 경우 '1인 대체와 2인 대체방식 중 더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의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법을 비롯한 모든 평가방법은 '어떠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용 임금률 선택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해온 문제이다. 물론 대부분 선행연구들의 경우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여성근로자 임금률의 선택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이혼 및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의 제도적 반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기준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 특히, 주부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주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연구와 관련,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관련된 기초자료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조사와 임금조사 및 직종조사의 조사시기나 조사내용이 상이한 이유로 인해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상의 한계가 지적되므로, 관련된 공식적 통계자료의 통합 체계가 요구된다.

둘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체직 선정과 임금률적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그 제도적 반영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기준(동일한 임금률)으로 적용, 평가받도록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

C(여성과 남성의 임금률을 합하여 2로 나누어 사용하는 평균임금률 적용)의 유용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결과의 정당성을 밝힘으로써 제도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정책적용에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측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한 임금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임금시장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노동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무급 가사노동의 숙련도 역시 결혼년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적 적용이 가능한 객관화된 지표로서 임금을 적용시 결혼지속년수를 근속년수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인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됨과 동시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보험제도, 재산분할 청구권 등에서 가사노동과 주부의 노동권을 인정하기 위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부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실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 나라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렇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GNP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경제 및 법체계에 적용, 시행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소득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무보수 가사노동과 관련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희(199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4), 25-47.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2.
- 김정희(1994).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對) GNP 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정희(1999).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9-30.
- 김준영(2001). 주부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연구. 통계청(편),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2001. 10), 1-96.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주최,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2001. 4. 27), 45-107.
- 노동부(2000). 199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문숙재(1990).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 신광출판사.
- _____ (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문숙재, 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_____ (1998).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36(4), 35-48.
- _____ (2001).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통계청(편),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2001. 10), 97-194.
- 문숙재,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41-52.
- _____ (1993).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

- 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3-24.
- 문유경(2001).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사용분석과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주최.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2001. 4. 27). 3-41.
- 여성부(2001).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부 정책자료 2001-23.
- 윤소영(1998).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_____(1999).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및 정책목표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31-42.
- 이기영 외(1997).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2.
- 정무장관(제2)실(1997). 가사노동 가치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정무장관(제2)실 정책자료집
- 정영금(1989).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4.
- 최명숙(1986).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통계청(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통계청(2000).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2001). 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Kulshreshtha, A. C. & Singh Gulab (1999). Valuation of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Paper presented at Time Use Seminar, Ahmedabad, India, December 1999*, 7-10.
- OECD National Accounts (2000). *Household production in OECD Countries: Data sources and measurement method*.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 Reid, M. (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UNDP (1995). *Human Development Report*.